

문서번호	안전감사팀-799 (2024.6.28.)
보존기간	10년
보고일자	2024. 06. 27
공개여부	공개

사원	과장	상임이사	이사장
			06/28
강승훈	백주호	이의성	한재천
협 조	팀장	정현석	과장
	팀장	안화태	팀장
		김강채	홍관표

20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보건 경영방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재난으로부터 시민과 공단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안전을 공단의 최우선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임직원과 시민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확립

우리는 재난·안전보건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과 재해경감활동체계(BCMS)를 지속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임직원의 생명보호에 앞장선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과제 실천

우리는 임직원의 소통과 참여 확대,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위험요인 통제시스템 강화, 위탁업체 안전보건 확보이행점검 강화,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및 공유를 확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전직원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우리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시나리오 다각화와 숙지도 평가를 하여 재난안전 분야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2024년 1월 1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요 약

구분	내용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반기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을 개선 하고,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근거 로 활용하고자 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대상	- 평가대상 : 공단 전부서의 2024년 상반기 안전보건활동 - 평가분야 : 중대산업재해분야 15개 점검 항목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절차	① 팀별 자체점검(6. 19.) → ② 총괄 점검(6. 27.) → ③ 결과 보고 및 공유(6. 28.) → ④ 개선 조치(7. 31.)
점검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완료 14건 / 해당없음 1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평가대상 50개 / 이행완료 50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점검 항목	점검결과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이행
② 전담조직 설치(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이행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반기1회 점검)	이행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이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지원 평가(반기 1회 점검)	이행
⑥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이행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반기 1회 점검)	이행
⑧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반기 1회 점검)	이행
⑨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확보 절차, 기준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점검)	이행
⑩ 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준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고	이행
⑪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조치 및 보고	해당 없음
⑫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점검(반기 1회 점검)	이행
⑬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⑭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점검(반기 1회 점검)	이행
⑮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이행

20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2024년 상반기 공단의 중대산업재해분야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해야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임

I 점검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계획(안전감사팀-615)

경영책임자(이사장)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조치에 관한 매뉴얼 마련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재해자 구호,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반기 1회) 및 미이행 사실 확인 시 이행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 기간: 2024. 5. 20.(월) ~ 6. 28.(금)

- 팀별 자체 점검: 5. 20.(월) ~ 6. 19.(수)
- 안전감사팀 총괄점검: 6. 20.(목) ~ 6. 27.(목)
- 안보건관리책임자 평가: 6. 28.(금)

□ 점검사항

-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성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

II

점검결과

□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결과 총괄표

법(제4조)	의무이행 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결과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이행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이행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이행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 수행 지원	이행	
		안전·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	이행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	이행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이행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이행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해당없음		
4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이행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이행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이행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팀 명	총계	2024년	2023년	2022년
총 계	3	0	2	1
공단본부	0	0	0	0
사천바다케이블카	0	0	0	0
사천시실내수영장	0	0	0	0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0	0	0	0
환경기초시설	3	0	2	1

□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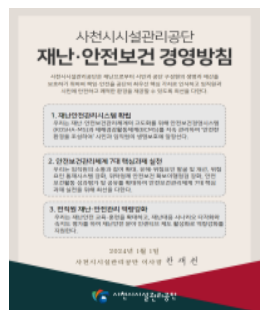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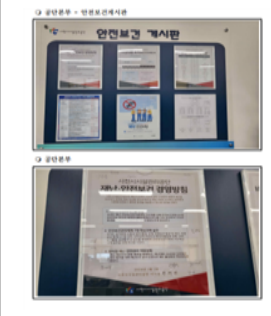
<p>우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시행령 제4조 7호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챗봇, 종사자 의견 제안 요청 등 다양한 청취 방법을 마련하고 운용하고, 상반기 종사자 제안요청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함 ○ 각 팀(사업장별) 안전점검의 날을 운용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23년 하반기 점검 대비 팀(사업장)별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점검결과표에 각 의무사항에 대한 증빙(문서번호, 사진)을 하여 점검의 객관성을 제고함 ○ 공단은 전직원 대상 재해경감훈련, 소방훈련, 비상조치교육.훈련 등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p>미흡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일지, 수료증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교육·훈련에 대한 대상자, 실시자, 미실시 인원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교육·훈련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단 및 팀별 재난·안전 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p>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공단 재난·안전교육 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2024. 7.) - (안전감사팀) 총괄 계획 및 교육훈련 인원 관리/ (각 팀) 팀별 계획 및 교육훈련 인원 관리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순회점검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 안전보건관리본부장(상임이사)가 참여하여 현장안전경영 실행 ○ 안전보건제안함, 경영책임자 레터링 등 종사자 의견청취를 위한 연초계획을 하반기 내 실시하여 안전보건 소통 확대

□ **결과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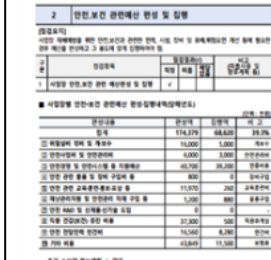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한 재 천	안전보건관리본부장	이 의 성
관리감독자	(팀장) 정현석, 김강채, 안화태, 홍관표		
점 검 자	정자영, 이진영, 신동민, 정승우, 강승훈	점검팀장	백 주 호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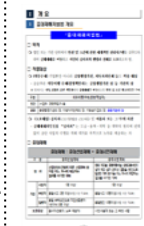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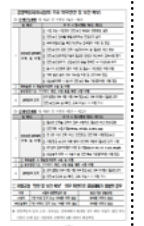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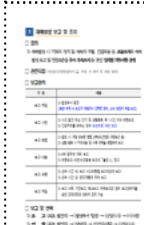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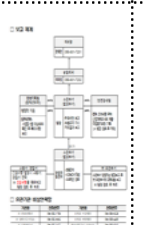

시행령 제4조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지방공공기관안전보건가이드라인」 제6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 경영책임자(이사장)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 · 안전·보건 목표는 공단 본부, 팀별로 설정하고 최종목표 이외에 세부 목표를 포함하여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	적정 적 부		
적정여부 판단기준	안전 보건 목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 본부, 사업 팀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
		②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 보건 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	☐
	안전 보건	①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 보호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
	경영 방침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정보망,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
증빙문서	①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 수립	안전감사팀-88 / 케이블카운영팀-15	☑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안전감사팀-386, 763	☑	☐
	③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안전감사팀-1983 / (현장 게시)	☑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3. 리더십 및 안전보건방침 수립 절차(SCFMC-SHM-P-05-02)			
점검결과	1. 공단의 경영책임자(이사장)의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한 안전 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함.(2024. 1. 1.) 2.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팀별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설정하고, 목표 추진계획의 결과보고를 제출함(안전감사팀-1983) 3.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전 팀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유를 하고 있음.(현장게시)			
실행문서	· 안전보건경영: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안전보건경영: 5.2 안전보건경영방침 · 안전보건경영: 6.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시행령 제4조2호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 「지방공공기관안전보건가이드라인」 제7조(인력확충), 제10조(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			
이행 요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담당 전문인력 배치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	적정		
적정여부 판단기준	①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인 경우) 법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 안전감사팀	☑	☐	
	②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했거나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증빙문서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대한산업안전협회) 보건관리자(진주 제일병원, 고려병원)	☑	☐
	② 공단 산업안전 보건조직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별표1]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4. 조직 및 업무절차(SCFMC-SHM-P-05-03)			
점검결과	1. 안전감사팀(2023. 1. 1.) 신설 및 공단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여 업무 수행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는 안전보건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진주 제일병원, 고려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음, 3. 각 팀별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실행문서	· 규정, 매뉴얼, 총괄계획, 점검 등 실행문서(안전감사팀-45, 55, 88, 569, 577, 601, 731, 756 등) · 2024년 안전관리자 점검보고서(1 ~ 6월) · 2024년 보건관리자 점검보고서(1 ~ 6월)			

시행령 제4조4호	재해예방 예산확보 및 집행 적정성 확인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 「지방공공기관안전보건가이드라인」 제17조 안전보건투자		
이행 요구사항	·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 편성 ·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기업의 규모와 보유한 유해·위험요인과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 ·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 후 집행을 계획한 것은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적정	
적정여부 판단기준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중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역도 포함)을 편성했다. ③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적	부
증빙문서	재난안전예산 편성(붙임 참조) 1. 공단본부 이행점검표 ① 위험시설,설비 정비 및 개보수 ②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2. 케이블카운영팀 이행점검표 ③ 안전경영 및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지원 ④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보호구 구입 ⑤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등 3. 체육시설팀 이행점검표 ⑥ 재난관리자원 및 안전관리 자재 구입 등 ⑦ 안전 R&D 및 신제품, 신기술 도입 ⑧ 직원 건강(보건)증진 비용 ⑨ 안전 전담 인력 및 인건비 ⑩ 기타 안전보건예산 4. 하수처리시설팀 이행점검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9. 자원, 역량 및 인식절차(SCFMC-SHM-P-07-01)		
점검결과	  		

시행령 제4조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이행 요구사항	·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할 것 ·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1회 이상 평가·관리	적정 적 부		
적정여부 판단기준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증빙문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준수평가표 (붙임6) ② 안전보건관리본부장 업무준수평가표 (붙임6) ③ 관리감독자 업무준수평가표(붙임6)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4. 조직 및 업무절차(SCFMC-SHM-P-05-03) 안전보건경영절차서별 책임과 권한 지정			
점검결과	1. 공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본부장, 관리감독자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2.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세부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3. 공단은 24년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본부장, 관리감독자 등의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였음 (2024. 6. 27.)			

시행령 제4조6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이행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서 사업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유능한 전문기관을 택했는지,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 받고 확인 	적정	
적정여부 판단기준	①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법적 요건 이상으로 배치했다.	☑	☐
증빙문서	① 선임대상자 선임서류(안전감사팀-55)	☑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3. 조직 및 업무절차(SCFMC-SHM-P-05-03) · 실행문서업무(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항)분장표		
점검결과	<p>1. 공단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를 대한산업협회 경남서부지회에서 선임하고, 보건관리자를 진주 제일병원, 고려병원에서 선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p> <p>2. 2024년 상반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정해진 기간 내 사업장을 순회하여 수행하고 있음. (1월 ~ 6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시행령 제4조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지방공공기관안전보건가이드라인」 제16조(작업중지 요청제) 		
이행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작성 · 대응 시나리오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포함 · 작성한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경영책임자들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적정	
적정여부 판단기준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
증빙문서	① 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상반기 비상조치 매뉴얼 개정)	안전감사팀-663	
	②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 구축·게시·공유	안전보건게시판 비상연락망 게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p>안전보건경영절차서: 1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SCFMC-SHM-P-08-02)</p> <hr/> <p>안전보건경영지침서: 24. 위험상황 작업중지 요청 지침(SCFMC-SHM-G-16)</p> <hr/> <p>안전보건경영지침서: 28.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 지침(SCFMC-SHM-G-20)</p>		
점검결과	<p>1. 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등 재해 발생시 대비 및 대응조치 매뉴얼을 구축·이행하고 있음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안전감사팀-105)</p> <p>2.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장소·설비·작업·공정에 대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 (비상조치 매뉴얼 개정/안전감사팀-663)</p> <p>3. 공단은 사건사고 보고절차를 수립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체계를 통일 하여 운영하고 있음. (안전감사팀-1080, 2023.)</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시행령 제4조9호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이행 요구사항	·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수행하려는 업무가 관련 법상 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 검토 · 산재예방 능력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주를 선정 (사업주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적정		
적정여부 판단기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처리계획 - 안전감사팀-1024)	☑	☐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처리계획 - 안전감사팀-1024)	☑	☐	
	③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	
증빙문서	① 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실적 정산 증빙 서류 ② 계약건(공사 및 용역 등)별 공고문 및 적격심사 관련 서류	계약담당자 확인 후 지출서류에 첨부하여 관리	☑	☐
☑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지침서: 19.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지침(SCFMC-SHM-G-11) 안전보건경영지침서: 26. 조달(구매)관리 지침(SCFMC-SHM-G-18)			
점검결과	1. 공단은 도급인인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에 관한 지침서를 구비하고 있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에 대한 평가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처리계획) 2. 경영기획팀 계약담당자가 계약서류 징구 시 적격수급업체평가 등 관련서류를 받아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관리하고 있음.			
실행문서	· 안전보건활동: 11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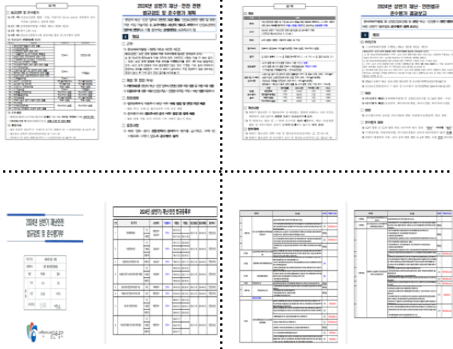
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지방공공기관안전보건가이드라인」 제21조(산재은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이행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분석 ·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경영책임자(이사장)등은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 받으며, 재해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적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적</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부</td> </tr> </table>		적	부
적	부				
적정여부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절차가 마련되어 있다.(사건사고 보고절차)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③ 재발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증빙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재해 발생)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산업재해조사표 등 포함 (2024년 상반기 발생없음) ②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절차서 (2024년 상반기 발생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p>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11. 비상시 대비 및 대응절차(SCFMC-SHM-P-08-11)</p> <hr/> <p>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 20. 산업재해(사고)조사 지침(SCFMC-SHM-G20)</p> <hr/> <p>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 28.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 지침(SCFMC-SHM-G-28)</p>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은 중대재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였음. 2. 공단은 재해발생 시 발생부서에서 원인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감사팀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총괄관리하고 있음 				
실행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활동: 13. 산업재해조사활동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3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이행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각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했다면, 경영책임자(이사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 본부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이 지적한 사항은 기한 내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 	적정	
적정여부 판단기준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에게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없음	
증빙문서	① 최근 3년간 과태료, 작업중지, 기타 개선 및 시정요청내역(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행분)	해당없음	
	② 시정조치에 대한 개선결과 내역(과태료 납부 영수증, 작업 중지 해제 증빙, 기타 개선조치 증빙서류)	해당없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15.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결과(SCFMC-SHM-P-10-02)		
점검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이사장에게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음 2. 공단은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작업중지, 기타 개선 및 시정요청내역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실행문서	· 안전보건경영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시행령 제5조2항 1호, 2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궤도운송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 관리법」 · 「소방 설비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행 요구사항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적정		
적정여부 판단기준	①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	☐	
	②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	
증빙문서	① 상반기 재난·안전보건법령 법규검토 및 준수평가 결과	안전감사팀-642, 777	☑	☐
	② 팀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문서(팀별 보관)	(수기 문서)	☑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절차서: 7. 법규 및 준수평가 절차(SCFMC-SHM-P-06-01-02)			
점검결과	1. 공단은 업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24개 재난·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대한 법규 등록을 하여 관리하고 있음. 2. 공단은 모든 부서가 공통법률, 개별적용 법률에 대한 상반기 법규검토 및 준수평가 실시를 완료하였음. 3. 법규검토 및 준수평가 결과 미이행 사항 0건			
실행문서	· 안전보건경영 6.1.2 법규 및 요구사항검토			



시행령 제5조2항 3호,4호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참조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 「지방공공기관안전보건가이드라인」 제9조(안전보건교육) 		
이행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함. ·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것이고,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준수 되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방지는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 경영책임자 등은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음 	적정	
적정여부 판단기준	①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점검하고 있다.	☑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
증빙문서	① 유해·위험작업 및 정기안전보건 교육 일지 및 수료증 ② (팀별) 자체 안전보건교육 일지	[붙임 1 ~ 5]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9. 자원, 역량 및 인식 절차(SCMFC-SHM-P-07-01)		
점검결과	1.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등 안전보건교육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 실시를 완료하였음. 2. 공단은 부서별(사업장)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음.		

근거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정	
			적	부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선임)				
산안법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보직 부임 시 임명 (지방노동관서 신고불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산안법 제17조 산안법 제18조	○ 안전관리자 선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관리자) ※ 300인 미만 사업장 :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가능 ○ 보건관리자 선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관리자) ※ 300인 미만 사업장 :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가능	보직 14일 내 지방노동관서 신고(필증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산안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 (1회/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3장 안전보건교육(근로자 등 안전·보건 교육)				
산안법 제29조	○ 직원 정기교육	<input type="checkbox"/> (분기별) 기술직 6hr, 사무직 3hr 이상 ※ 휴가, 출장 등 부재시 보충교육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자체교육(현장교육)시 교육일지 - 교육인원, 교육강사(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증빙(교육자료, 사진 등) - 보충(부재자) 교육일지(인원, 강사, 증빙, 교육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위탁교육시 수료증	<input type="checkbox"/> 반기 12hr 이상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신규채용 교육	① 자체교육(현장교육)시 교육일지 - 교육인원, 교육강사(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증빙(교육자료, 사진 등) - 보충(부재자) 교육일지(인원, 강사, 증빙, 교육시간) ② 위탁교육시 수료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거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정	
			적	부
제3장 안전보건교육(근로자 등 안전·보건 교육)				
산안법 제29조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직 변경) 2hr 이상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① 자체교육(현장교육)시 교육일지 - 교육인원, 교육강사(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증빙(교육자료*, 사진 등) *직무연관성 확인 - 보충(부재자) 교육일지(인원, 강사, 증빙, 교육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위탁교육시 수료증 - 보충(부재자) 교육일지(인원, 강사, 증빙, 교육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직원 특별 안전교육(유해위험 종사자*)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맨홀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작업자(40개 작업)	<input type="checkbox"/> (최초 보직) 16hr 이상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 최초작업 종사전 4hr이상, 3개월이내 12hr 시행 ① 자체교육(현장교육)시 교육일지 - 교육인원, 교육강사(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증빙(교육자료*, 사진 등) *작업연관성 확인 - 보충(부재자) 교육일지(인원, 강사, 증빙, 교육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위탁교육시 수료증 - 보충(부재자) 교육일지(인원, 강사, 증빙, 교육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input type="checkbox"/> (연간) 16hr 이상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① 위탁교육시 수료증 ② 자체교육(현장교육)시 교육일지 - 인원, 교육강사(안전관리자), 증빙(교육자료, 사진 등) - 보충(부재자) 교육일지(인원, 강사, 증빙, 교육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최초 보직) 신규, 보수 6H 이상 ※인터넷교육 2H 이하 + 집체·현장교육 4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① 위탁교육 수료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거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정																																																	
			적	부																																																
제3장 안전보건교육(근로자 등 안전·보건 교육)																																																				
산안법 제29조	○ 안전관리자 교육(위탁)	<input type="checkbox"/> (최초 보직) 신규 34H, 보수 24H 이상 ※인터넷교육 전체 2/3 이하 + 집체·현장 교육 1/3 이상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위탁교육 수료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보건관리자 교육(위탁)	<input type="checkbox"/> (최초 보직) 신규 34H, 보수 24H 이상 ※인터넷교육 전체 2/3 이하 + 집체·현장 교육 1/3 이상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위탁교육 수료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안법 제36조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수립 (작업행동, 설비, 장비, 기계 등)	<input type="checkbox"/> 정기(수시)위험성 평가시행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산안법 제3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여부 확인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input type="checkbox"/>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표지 부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수점검시설(증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위험물질저장소(휘발유, 가스 등) - 물질안전보건대상(MSDS) - 인화성물질 등 표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밀폐공간(전력구, 맨홀, 정화조, 물탱크 등) - 질식위험공간 위험표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기계실 및 변전소 - 개구부 떨어짐, 감전, 접근금지 등 표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기타 위해개소(이동통로, 난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tr> <td>출입 금지</td> <td>보행</td> <td>차량 통행</td> <td>사용</td> <td>탑승</td> <td>금연</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인화성 물질</td> <td>산화성 물질</td> <td>폭발성 물질</td> <td>급성독성 물질</td> <td>부식성 물질</td> <td>고압 전기</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출입 금지	보행	차량 통행	사용	탑승	금연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고압 전기							<table border="1"> <tr> <td>보안경</td> <td>방독 마스크</td> <td>방진 마스크</td> <td>보안면</td> <td>안전모</td> <td>귀마개</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녹십자 표지</td> <td>응급구호 표지</td> <td>들것</td> <td>세안 장치</td> <td>비상용 기구</td> <td>비상구</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보안경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보안면	안전모	귀마개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 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출입 금지	보행	차량 통행	사용	탑승	금연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고압 전기																																															
보안경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보안면	안전모	귀마개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 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근거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정	
			적	부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안법 제54조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보고 및 대책 수립, 실행 * 중대재해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등	산업재해조사표(지방노동관서) 제출 여부 - 1개월 이내(중대재해는 즉시) <input type="checkbox"/> 필수서류(증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산안법 제57조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등 수치 통계화 <input type="checkbox"/> 필수서류(증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 조치 등				
산안법 제80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input type="checkbox"/> 방호장치의 상시 점검 및 정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호조치 해체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수점검시설·서류(증빙) ① 보유 기계기구설비 적격품, 법정검사, 검사필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4절 안전검사				
산안법 제93조	○ 유해·위험기계·기구 정기 안전검사	<input type="checkbox"/> 유해·위험기계·기구 정기 안전검사 시행 ※ 크레인, 고소작업대(활선작업차, 저압보수차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산안법 제94조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input type="checkbox"/> 정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및 대상기계 부착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필수서류(증빙) ① 보유 기계기구설비 적격품, 법정검사, 검사필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산안법 제95조	○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사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안전검사 미시행, 불합격 대상기계 사용 금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거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정	
			적	부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산안법 제114조 제115조	○ 건강 유해 및 물리적 위험성 물질 관리 (휘발유, 구내식당 가스 등)	<input type="checkbox"/> 게시물 주기적 확인 <input type="checkbox"/> MSDS경고표시 부착 및 취급자 교육확인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현황판 - 관리내용 포함 사항 : ① 제품명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취급자 교육일지(채용시, 작업변경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산안법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및 조치 (시행규칙 [별표21]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 * 하수처리시설팀	<input type="checkbox"/> 작업환경측정 시기 준수, 결과에 따른 근로자 주지 및 조치 (신규가동 30일 이내, 정기 1회 이상/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신규, 정기) 보고서 (위탁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근로자 주지 및 개선·조치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안법 제129조 제130조	○ 건강진단(일반, 특수*) 시행 및 사후관리 * 월 평균 4회 이상 야간작업(22시~오전6시) 근로자 및 유해인자 취급 특수사업소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미수검자 검진여부 확인 (사무직 1회 이상/2년, 그 외 1회 이상/1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진단결과 이상소견자 사후관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증빙) ① 건강검진 총괄표(또는 결과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이상소견자 재검사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재난·안전교육훈련 계획 재수립(전부서) 07. 31.(수) 한
-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계획 수립(안전감사팀) 11. 15.(금) 한
-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안전감사팀)12. 29.(금) 한

붙임 1. 공단본부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표 1부.

2. 케이블카운영팀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표 1부.

3. 사천시설내수영장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표 1부.

4.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표 1부.

5. 하수처리시설팀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표 1부.

6. 관리책임자 업무준수평가표 1부.